

보험급여의 청구절차

-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

1. 간병급여제도

가. 개설

현행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기준상 간병료는 요양기간 중에만 지급되고 있어 요양 종결 후 실제로 계속적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자의 경우 자비로 간병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증 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병급여제도를 신설(2000. 7. 1. 시행)하였다.(산재보험법 제42조의 3)

간병급여 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31조의 3)

나. 간병급여 지급 대상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1~2급의 중증 장해자로 하되, 상시 간병이 필요한 자와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 간병급여액

① 간병급여액은 요양 종결 후에는 대부분 가족이 간병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 간병료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② 상시간병급여 : 일 24,775원

수시간병급여 : 일 16,516원

※ 간병료는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 월급여 총액을 기초로 한다. 간병료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시행 규칙 제26조)

라.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3제1항 관련, 별표 2의2)

(1) 상시간병급여

① 지급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② 지급기준

→ 법 제4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 수시간병급여

① 지급대상

보험급여의 청구절차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 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를 제외한다.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2) 지급기준

-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2. 상병 보상 연금

가. 의의

“상병보상연금”이라 함은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써 급여를 말한다.

나. 지급요건 및 절차

(1) 지급요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급~3급에 해당할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2항 관련 별표3 참조)

(2) 청구자

피재근로자

(3) 청구시기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4) 급여내용

(1) 연금액

폐질의 정도에 따라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은 291분, 3급은 257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2항 관련 별표3 참조)

(2) 청구방법

청구에 의하여 12등분하여 매 월별로 수령하게 된다.

※ 상병보상연금최저기준 상향 조정

- 최고 보상한도제 도입과 동시에 최고·최저의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업급여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 그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도 70분의 100으로 상향조정함. 2001. 7. 1. 이후 재해자부터 적용, 기존재해자는 제외
- 최저임금 × 1/0.7 × (상병보상연금일수/365)

(5) 청구절차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 청구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6)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 ①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
- ②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 보상연금의 지급시에는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가능하다.

(7)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3 및 제39조의 2 관련)

감액대상연령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기준
65세 이상	연금액의 100분의 93

다. 상병보상연금 관련 질의회시

(1) 상병보상연금 대상 여부

◀질의내용▶

병원에서 종결을 보고 희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탈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시내용▶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요양이 종결되면 그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 대상여부가 결정되며, 동 장해 급여는 장해보상 일시금과 장해등급이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될 경우의 장해보상 연금 중 수급권자(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수령할 수 있으나, 일시금 수령자가 연금으로 전환 할 수

는 없습니다.

(2) 상병보상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 적용시점

◀질의내용▶

상병보상연금제도가 1983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적용일자는 각 지방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혜택의 적용일자는 언제부터인지요.

◀회시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동 제도는 '83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이 '83년 8월 6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 연금의 지급사유는 '83년 8월 6일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3) 3년이상 요양 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의 퇴직조치는 정당한지 여부

◀질의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4항의 규정 중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예고없이 회사에서 퇴직조치를 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퇴직조치를 하여야 타당한지요.

예를들면, 직업병(진폐)으로서 8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입원요양중인자가 금번 상병보상연금

보험급여의 청구절차

(제2급 3호)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 요양 개시후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회사에서 퇴직조치를 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2. 상병보상연금해당자 중 계속 요양을 하여야 할 경우 일정기간까지만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여 하는지요. 요양종결시까지 계속 상병보상연금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3. 직업병(진폐) 근로자가 회사와 민사에 가름하는 합의를 하고 퇴직을 하였으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80년 9월 29일부터 3년이 넘도록 계속 요양을 하던 중 83년 8월 6일부터 상병보상연금(제2급 제3호)에 적용되어 상병보상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자인 경우 회사에서 계속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회사와는 모든 관계가 종결되고 본인이 직접 노동부와 관계를 하여야 하는지요.

◀회시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11조 제4항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당해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서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3. 장의비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45조)

가. 청구자

장제의 실행자

나.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설정

(1) 장의비는 장제에 소요된 실제비용의 보전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수소득 비례 형태로(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되어 개인별, 소득계층별, 직종별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하도록 하였다.(2001. 7. 1. 시행)

(2) 설정기준은 전년도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근로자 1인당 평균 장의비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득비례분으로 평균임금(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의 30일분을 합한 금액을 최고·최저 장의비로 결정하였다.

다. 결정금액

- 최고금액 : 금 8,599,940원

- 최저금액 : 금 5,638,130원

라. 청구절차

- 장의비청구서(산재보험법 서식규정 별지 제55호)작성, 공단 제출

- 장의비청구서식은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와 같이 사용